

日本石油稅制의 개정추진방향

石油連盟 建議事項 全文

日本石油連盟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石油諸稅의 철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금년 초에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다케우찌 日本石油 사장은 稅制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石油稅制 개정 건의사항을 작성, 각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石油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他에너지와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石油에 부과된 세금이 석유정책시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도로정비나 代替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1차 에너지산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石油產業의 체질강화를 위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전문을 읽겨 싶는다(編輯者註).

I. 石油諸稅

석유제세의 증세반대

— 휘발유세, 輕油去來稅, 石油가스세, 항공기연료세의 증세에 대한 반대와 이들 諸稅의 경감조치를 강구할 것.

— 원유관세, LPG 관세를 철폐할 것

— 石油稅의 세율을 경감하고, 용도를 석유정책에 한정할 것

〈解 説〉

— 日本경제에 있어서 1차에너지 공급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石油의 코스트 절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대폭 상승한 原油가격에다 2조 9천 760억円(84년도 예산)에 달하는 거액의 石油諸稅로 인해 石油 코스트가 더욱 상승하여 石油產業에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石油諸稅는 국세수입중 6.8%(84년도 예산)나 되

어 간접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용도는 石油대책에 불과 13%밖에 할당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도로정비(79.1%), 석탄대책(4.2%) 등에 쓰이고 있다.

石油를 포함한 에너지의 공급안정과 코스트 절감이 에너지정책의 기본 명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石油의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石油諸稅의 철폐·경감 등 근본적인 수정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석유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그 도입을 위한 재원을 石油諸稅로 충당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石油諸稅에 대해 살펴보면,

① 휘발유는 1954년 4월에 진급·임시조치로서 도로 정비재원이 된 이후, 이미 약 30년이 경과했다. 이 동안에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原油가격이 폭등하는 등 석유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7회에 걸쳐 増稅가 이루어져 석유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輕油去來稅 및 석유가스 세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정비재원의 확보등을 이유로 한 挿發

油稅 등의 증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반대 한다. 이들 諸稅에 대해서는 85년 3월말 잠정세율 기간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경감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原油관세는 유럽 주요국에서도 그 예가 없는 것으로, 원래 면세품목이었으나, 1960년 4월 국내 石炭產業대책의 재원으로서 특정화되었다. 이 조치는 1955년대에 석탄에서 石油로 급속한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자 국내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그 대책재원이 되었으나, 그 이후 거듭 잠정조치를 연장,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 4월 이후 原油·重油관세로 석탄대책에 충당된 누계액은 무려 2조3백억円이나 된다. 石油는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는 石炭에 대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다가 原油관세의 부과와 이를 재원으로 한 석탄산업의 조성으로 인위적인 경쟁력 약화의 이중 부담까지 안고 있다. 石油產業의 현실태를 고려할 때 原油關稅는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3) 유럽 주요국에서도 그 예가 없는 石油稅는 석유비축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대책 재원으로서 78년 6월에 신설되었으나, 증가세여서 그후의 원유 가격 등귀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폭 증세되었다. 더우기 금년도 세제개정시에 석유업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석유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石油 세율의 인상(3.5%→4.7%)과 수입 LPG 및 LNG 등에 대한 신규파세(1.2%)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고율의 세부담과 거액의 石油稅, 거기마다 석유세를 재원으로 한 석유대체 에너지 조성금에 의해 石油는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따라서 석탄·LNG 등 代替에너지에 대해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다. 石油產業의 현실태를 고려해 볼 때 石油稅의 세율은 경감해야 되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본래 목적인 石油政策에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업을 대상으로 한 석유자원 탐광투자준비금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① 적립기준—石油精製 및 판매수입의 1/1,000과 석유정제 및 판매소득의 2/100중 적은 쪽의 금액

② 환입기준—적립 후 5년 경과시 이익금 산입

〈환입특례〉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후 3년동안 적격하게 지출(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경과후 연도부터 세로운 적립을 중지시키고 이미 적립한 준비금을 일괄 이익금 산입한다(이에 따라 한번 준비금을 계상한 권리를 잃은 法人이 세로이 적격하게 지출을 한 경우는 지출년도부터 다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解 説〉

석유탐광은 막대한 資金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위험도가 높다. 특히 최근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는 기업의 내부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石油精製 및 판매기업은 OPEC의 원유가격정책과 환율변동 등으로 損益의 변동이 심하고 수익수준도 낮기 때문에 탐광자금의 확보는 곤란하다.

石油의 공급안정을 위해서는 石油精製 및 판매기업이 직접 石油를 탐광,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석유탐광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석유개발 稅制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탐광 개발회사로서는 내부자금축적책으로서의 탐광준비금, 지출단계에서의 탐광비의 특별공제 제도가 있다.

② 石油탐광 개발회사의 외부자금 도입촉진세제로서는 해외투자등 損失準備金制度가 있으나, 이것은 탐광·개발투자가 확정된 경우의 稅制여서 탐광투자의 자금을 사전에 확보할 조치가 없고, 석유정제·판매기업의 석유개발 진출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주) 탐광사업이 日本의 석유자원 확보에 유용하다는 것을 通產省 장관이 인정한 탐광사업계획에 의거한 지출을 말하며, 자원탐광 사업 법인에 대한 출자를 포함한다.

II. 國 稅

1. 법인세 관계

(1) 석유자원 탐광 投資準備金制度의 신설

현행 탐광준비금과는 별도로 석유정제 및 판매기

이를 위해 석유정제·판매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내부자금의 충실을 꾀해 석유탐광 개발에 적극적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세제로서 석유자원 탐광 투자准备金制度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2) 公害방지관계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공해방지 관계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초년도 25/100)가 85년 3월말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 줄 것.

〈解 説〉

폐수처리용 설비, 매연처리용 설비, 질소산화물 억제설비, 산업폐기물 처리용 설비는 모두 조세특별 조치법 제43조 제1항표의 제1호에 의거, 公害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재해방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금년도 25/100의 특별상각이 인정되고 있다. 石油業界는 이를 설비를 건설하여 국가 시책에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이를 설비의 전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절약 관계 설비(열교환기, 폐암력 회수장치, 증기회수장치 등)에 대한 특별상각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에너지절약 관계설비중 특별상각제도(초년도 18/100)가 85년 3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나, 이를 연장해 줄 것.

〈解 説〉

石油業界에서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근본적인 설비투자를 통한 에너지절약대책이 필요하다.

설비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성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LPG 備蓄施設에 대한 할증상각제도의 적용요건 개정 및 적용기한의 연장

LPG 비축시설에 대한 할증상각제도(5년간 34/

100)의 적용요건을 石油가스 비축의 실태에 입각해서 개정함과 아울러 85년 3월말로 기한이 끝나는 것을 연장해 줄 것.

〈解 説〉

LPG 비축은 긴급시에 대비해 국가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石油備蓄法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LPG 기업은 국가적 요청에 부응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연장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는 최근의 LPG비축실정 등을 감안하여 비축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5) 수취배당등의 利益金 불산입에 관한 특정이자에 石油輸入金利를 추가

수취배당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특정이자의 범위를 확대, 石油輸入에 따라 발생하는 유전스 금리를 포함시킬 것.

〈解 説〉

수취배당등은 이를 지불하는 법인의 단계에서 法人稅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취법인에게는 일정 요건하에서 익금액으로 산입하지 않게 되 있다. 이 경우에 수취배당등의 금액에서 그 주식등에 관한 분의 지불금리를 공제한 금액이 익금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특정이자는 이 지불금리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석유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유전스 금리는 현재 지불금리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배당등을 받기 위해 그 자원이 되는 주식등의 취득에 필요한 지불금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특정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익금불산입액 = 수취배당등 - [(지불이자 - 특정이자) × 배당등의 원천이 되는 주식등의 장부 가액 등 ÷ 총자산의 장부가액]

② 특정이자 : 수취배당등의 원천인 주식등의 취득에 충당되지 않는 것의 이자로서 특정돼 있는 것이며 사채이자, 장기 차입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등이 있다.

(6) 價格變動 準備金 制度의 현행 적립률의 존속

가격변동 준비금제도는 85년도(적립률 0.5%)로 기한이 만료되나, 85년도 이후에도 현행적립률(84년도 1.5%)로 존속시킬 것.

〈解 説〉

가격변동 준비금제도는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價格變動이 심한 물품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原油 등의 주요한 재고자산의 일정비율을 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실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原油價格은 산유국의 정책 및 환율변동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앞으로도 심한 변동이 예상된다. 石油產業은 다른 산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석유비축법에 의해 90일분의 비축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비축을 原油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자산은 막대한 금액에 달하므로 가격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85년도 이후에도 현행 적립률(84년도 1.5%)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2. 間接稅 관계

(1) 석유화학용 국산나프타에 대한 石油稅의 면세조치 신설

석유화학용 국산나프타에 대한 石油稅의 면세조치를 신설할 것.

〈解 説〉

油化用수입 나프타는 石油稅가 면세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原油를 처리하여 생산되는 국산나프타에 대해서 原油 단계에서 석유세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 균형을 잃은 조치이기 때문에 국산나프타에 대한 石油稅를 납세의무자인 석유정제업자에게 면세해 주는 조치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2) 석유제품 제조용 燃料에 대한 石油稅의 비과세제도 신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연료에 대한 석유세의 비과세제도를 신설할 것.

〈解 説〉

소비세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품이 제조장내에서 소비된 경우, 장내소비로서 과세토록 돼 있으나, 그 소비가 새로운 과세 대상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인 경우 장내 소비 부적용으로서 비과세조

치가 취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挥發油稅는 「휘발유 제조장치의 세척용 또는 해당 제조 장치에 부착된 加熱爐에서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휘발유의 원료를 가열하기 위한 연료용으로서 휘발유가 소비될 경우」에 대해서 「장내소비 부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石油稅는 원료인 原油에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燃料에 대해서도 과세되고 있다.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최종제품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으나, 石油稅는 최종제품(석유제품)이 아니라 원료인 原油에 과세되고 있다. 이것은 石油稅가 석유제품 전체에 과세됨으로써 휘발유세 등의 기존 소비세와의 2중과세가 되고, 또한 징세도 복잡해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석유제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과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 원유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래 과세 대상물품이라고 할 석유제품과 원유를 동일하게 간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石油稅에 있어서도 石油製品(원래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장치의 원료로서 석유제품·반제품을 소비할 경우, 이를 「장내소비 부적용」으로서 비과세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原油를 석유제품으로 간주하는 예로서 관세법 제59조2(원료과세)에 「보세작업에 의해 제품을 수입할 경우, 그 관세의 확정에 대해서는 원료(원유)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3. 關稅 관계

(1) 중간유분 석유제품 등의 증산에 관한 原油關稅 환급제도의 확충 및 적용기한의 연장

중간유분 석유제품등의 증산에 관한 관세환급 제도의 현행 환급률을 原油관세 640円/kℓ 상당액까지 인상할 것.

이 제도가 85년 3월말로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

〈解 説〉

앞으로 日本의 석유제품 수요는 灯油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輕質化해 갈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輕質原油의 확보는 매우 곤란한 상황

이기 때문에 灯油 등 중간유분의 공급안정이 국민 경제적인 과제이다.

石油企業은 石油業法에 의거 책정된 석유제품 공급계획에 따라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간유분의 공급안정에 대해서는 관민합동으로 석유제품의 규격 개정등의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어떤 대책에도 한계가 있으며, 당면한 중간유분의 공급확보는 중간유분 증산설비의 건설, 重油 탈황설비 등의 중간유분 증산형에 대한 개조 및 운전조건의 개선 등에 의한 설비적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설비자금이 필요하고 그 결과 코스트가 대폭 증대한다. 그러나 石油企業은 중간유분의 공급안정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 세제로서 이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간유분 증산설비의 건설, 기존설비의 개조, 운전조건의 변경 등에 필요한 코스트의 절감을 더욱 빠하기 위해 현행 환급률을 原油관세 상당액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다. 즉, 중간유분 석유제품은 350円/kℓ에서 570円/kℓ으로 重質油 석유제품은 300円/kℓ에서 440円/kℓ으로 인상해 주길 바란다.

한편 환급률에 대해서는 84년도의 自民黨 세제개정 요강에서 85년도 稅制개정의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제도는 85년 3월말로 적용기한이 끝나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2) 重油에 대한 관세할당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重油에 대한 관세할당제도가 85년 3월말로 유효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 줄 것.

〈解 説〉

日本의 1차에너지 공급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石油製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행

重油관세 할당제도에 의해 국내공급이 곤란한 低硫黃重油를 필요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III. 地方稅

고정자산세 관계

석유정제 2차설비에 대한 固定資產稅 경감조치의 신설

석유정제 2차설비(석유자원의 이용고도화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 경감조치를 마련할 것.

석유정제 2차설비의 정의 : ① 접촉분해 장치 ② 수소화 분해장치 ③ 열분해 장치

〈解 説〉

原油의 重質化와 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에 대응해서 민생용을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비의 고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고도화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운전코스트가 증대됨으로써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접촉분해장치와 수소화분해장치등의 석유정제 2차설비를 도입하고, 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성책의 일환으로써 84년도 稅制개정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투자촉진 세제(7%의 세액공제 또는 초년도 30%의 특별상각의 선택적용)가 신설되어 석유정제 2차설비가 「석유 자원의 이용고도화에 필요한 설비」의 대상이 되었다.

설비의 고도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정부 조성책과 아울러 지방자치체에서도 앞으로 설명한 설비에 대한 固定資產稅 경감조치의 신설등 조성책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雙龍精油, 주간석유에너지정보〉